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6. 21.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6월 8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6월 16일

라. 상정일자: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2.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조성익)

가. 제안이유

-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권영향평가 실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인권위원회 구성 단서 신설 및 구성원의 명확화(안 제11조)
-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등 전반적인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현재 방침에 따라 시행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의2는 구청장이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영향평가 제외 대상의 내용을 신설함.
- 안 제11조제2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그 밖에 개정 조문은 내용을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 등을 올바르게 정비한 것임.

○ 검토 결과

- 본 개정안은 영등포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 존중의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 내부 행정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권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83 호
----------	---------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의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조문 정비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권영향평가 실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나. 인권위원회 구성 단서 신설 및 구성원의 명확화(안 제11조제2항)
- 다.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등 전반적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국가인권위원회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 개선안 동의
- 라. 입법예고(2022. 5. 12. ~ 6. 2./ 21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등포구민”을 “영등포구 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헌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영등포구”로 한다.

제5조 중 “시행시”를 “시행 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들을수”를 “들을 수”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구민의견”을 “구민 의견”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인권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권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6조 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 제4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권관련”을 “인권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영등포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로, “의원”을 “구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권관련”을 “인권 관련”으로 한다.

제12조 단서 중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을 “보궐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